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2. .
제 출 자 오강현 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관람석을 원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좌석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등)
-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 . ~ 2025. 2.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4. 6. . ~ 2024. 11.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김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김포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을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함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이하·시·”를 “(이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최적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를 “동행자”로 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장애인 등 관람석에 관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최적관람석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적 관람석”을 “등의 최적관람석”으로 한다.

① 시장은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최적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은 장애인보호자”를 “자는 장애인 동행자”로, “최적 관람석”을 “등의 최적관람석”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 중 “최적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

3. “최적관람석”-----

-----.

4. ----- 동행자-----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등 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
-----.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

----- 등의 최적관람석 -----.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
----- 최적
관람석-----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

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

----- 장애인 등
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
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 자는 장애인 동
행자-----
----- 등의 최적관람
석-----
-----.

제7조 (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

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
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
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
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

----- 최적
관람석-----

다.

① · ② (생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05. 9. 3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565호, 2005. 9. 30., 제정]

경기도 김포시(노인장애인과), 031-980-2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김포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70호
----------	--------

제출년월일 2025. 2. 11.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출 이후 소관 부서와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수정하고,
- 안 제8조 조문 중 ‘관내의’ 라는 수식어가 앞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공연장 등’ 의 의미에 오히려 혼동을 줄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며,
- 단순 누락된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의미를 명확히 수정(안 제4조 제1항)
- 조문의 의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의’ 라는 문구를 삭제(안 제8조)
-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을 추가 (안 부칙)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각”을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관람석을”을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중 “관내의 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u>관람석</u>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u>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u>관내의 공연장</u>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 <u>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u> ----- <u>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u> ----- . <u><단서 삭제></u></p> <p>제8조 (재정지원) ----- <u>공연장</u> -- ----- ----- ----- ----- .</p>